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96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중단 및 폐원이 증가하면서, 보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행 조례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될

경우, 관할 구청장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이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폐원 및 운영 중단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의 지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이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정의를 개정(법률 제20219호, 2024. 2. 6., 일부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